

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1. 8 조례 제2101호
일부개정 2024. 5. 10 조례 제2511호(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,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)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
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
3.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

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.

제4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.

제5조(활동실적 점검 등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,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

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,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지원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관내 국가유산·박물관 관람료, 자연공원 및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5. 10>

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7조(표식)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위탁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5. 10 조례 제2511호,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문화재·박물관”을 “국가유산·박물관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⑫ 까지 생략

제3조 생략